

#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12 월 일  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이유

- 『공직선거법』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신설 등 중선거구제에 따라 시·군의회의원정수와 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명의 개정 : “충청북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
나. 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조정(안 제2조)

- 현행 155명을 ⇒ 131명으로

다.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(안 제3조)

- 총 150개소를 ⇒ 37개소로
  - 2인 선거구 : 7개소
  - 3인 선거구 : 20개소
  - 4인 선거구 : 10개소

4. 의안전문 : 붙임

5. 관계 법령 발취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 의견 : 의견없음

## 충청북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공직선거법』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·군 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『공직선거법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『공직선거법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「별표 1」

시·군의회의 의원 정수

구 분 시군별	의원정수			비 고
	계	비례대표 의원정수	지역구 의원정수	
계	131	17	114	
청 주 시	26	3	23	
충 주 시	19	2	17	
제 천 시	13	2	11	
청 원 군	12	2	10	
보 은 군	8	1	7	
옥 천 군	8	1	7	
영 동 군	8	1	7	
증 평 군	7	1	6	
진 천 군	7	1	6	
괴 산 군	8	1	7	
음 성 군	8	1	7	
단 양 군	7	1	6	

「별표 2」

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
충청북도	계	114	13읍 90면 50동
청주시	계	23	29동
청주시 상당구	상당구계	10	13동
	청주시 “가”선거구	4	중앙동, 우암동, 내덕제1동, 내덕제2동, 율량·사천동, 오근장동
	청주시 “나”선거구	3	성안동, 탑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,
	청주시 “다”선거구	3	영운동, 용암제1동, 용암제2동
청주시 홍덕구	홍덕구계	13	16동
	청주시 “라”선거구	3	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사창동, 모충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
	청주시 “마”선거구	3	산·미·분장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,
	청주시 “바”선거구	4	운천·신봉동, 복대제1동, 봉명제1동, 봉명제2·송정동, 강서제2동
	청주시 “사”선거구	3	복대제2동, 가경동, 강서제1동

시·군·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
충주시	계	17	1읍 12면 12동
	충주시 “가”선거구	3	주덕읍, 살미면, 수안보면, 이류면
	충주시 “나”선거구	2	신니면, 노은면, 양성면, 가금면
	충주시 “다”선거구	4	성내.충인동, 지현동, 문화동, 호암.직동, 달천동, 봉방동, 칠금.금능동
	충주시 “라”선거구	3	금가면, 동량면, 산척면, 엄정면, 소태면
	충주시 “마”선거구	3	교현.안림동, 교현2동, 용산동
	충주시 “바”선거구	2	연수동, 목행·용탄동
제천시	계	11	1읍 7면 9동
	제천시 “가”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
	제천시 “나”선거구	4	고암.모산동, 중앙·의림·명동, 서부·영천동, 용두동, 청전동
	제천시 “다”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
제천시 “라”선거구	3	교동, 남천·동현동, 신백·두학동, 화산동,	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
청원군	계	10	1읍 13면
	청원군 “가”선거구	3	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
	청원군 “나”선거구	2	남이면, 현도면, 부용면
	청원군 “다”선거구	3	내수읍, 오창면, 북이면
	청원군 “라”선거구	2	강내면, 강외면, 옥산면
보은군	계	7	1읍 10면
	보은군 “가”선거구	4	보은읍, 내속리면, 외속리면, 마로면, 탄부면
	보은군 “나”선거구	3	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북면, 내북면, 산외면
옥천군	계	7	1읍 8면
	옥천군 “가”선거구	3	옥천읍, 군서면, 군북면
	옥천군 “나”선거구	4	동이면, 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, 이원면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
영동군	계	7	1읍 10면
	영동군 “가”선거구	4	영동읍, 양강면, 용화면, 학산면, 양산면
	영동군 “나”선거구	3	용산면, 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, 심천면
증평군	계	6	1읍 1면
	증평군 “가”선거구	4	증평읍
	증평군 “나”선거구	2	도안면
진천군	계	6	1읍 6면
	진천군 “가”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
	진천군 “나”선거구	3	덕산면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
괴산군	계	7	1읍 10면
	괴산군 “가”선거구	4	괴산읍, 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칠성면, 소수면, 불정면
	괴산군 “나”선거구	3	문광면, 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의원 수	선거구역
음성군	계	7	2읍 7면
	음성군 “가”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
	음성군 “나”선거구	4	금왕읍, 대소면, 삼성면, 생극면, 감곡면
단양군	계	6	2읍 6면
	단양군 “가”선거구	3	단양읍, 대강면, 적성면, 단성면,
	단양군 “나”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



## 관계 법령 발취

### □ 공직선거법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(이하“시·도의원지역구”라 한다)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)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, 그 시·도의원지역

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
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